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00

발의연월일: 2021. 3. 29.

발 의 자:김상훈·김영식·강대식

양금희ㆍ서병수ㆍ조수진

송석준 • 전주혜 • 장제원

박대출 • 이종배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주 및 그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생애최초로 취득당시가액이 3억 원(수도권의 경우 4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취득당시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 세를 면제)하고 있음.

이러한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수도 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무주택 세대의 내 집 마 련에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주택자에 대 하여 취득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 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주택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를 통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 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	대한 취득세 감면) ①
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	
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	
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	
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	
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	
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	
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	
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	
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 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 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 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 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 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 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 2. (생략)

② ~ ⑥ (생 략)

<u>2024년</u>	
12월 31일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